

프랑스의 내부고발 근로자에 대한 보호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프랑스

이은주 (프랑스 파리10대학교 사회법 박사과정)

■ 머리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제보자’로 부르기도 하는 ‘내부고발자’는 19세기 미국에서 정부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는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1863)상 ‘Whistle-blower’란 용어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프랑스에서도 내부고발자를 지칭할 때 ‘Lanceur d’alerte’란 표현을 사용하지만 아직 용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최근에 들어서야 시사적으로 종종 언급되고 있다. 단어 사용 빈도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듯이 프랑스는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특정 위협이나 상황에 국한된 단발적인 법률만 규정되었으며, 이때에도 내부고발자를 지칭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었다(Agnès Cerf-Hollender, 2016).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유럽 내 내부고발자 보호 법률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유럽국가 중 단지 7개국(아일랜드, 영국, 헝가리, 세르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만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선구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를 받는 영국의 경우, 내부고발로 인정해주는 적용범위로 유럽 내 가장 많은 종류의 범죄와 부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선의로 신고했다면, 이후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보복을 당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다. 반면 당시 조사에서 프랑스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이 ‘부분적’인 보호 수준

에 그치고 있다며 낮은 평가를 받았었다. 또한 2015년 12월,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Harris Interactive)에 따르면, 내부고발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근로자들 중 39%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아직 내부고발자에 대한 프랑스의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Novethic, 2016).

그러나 올해 프랑스에서는 내부고발이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월,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État)는 내부고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3월에는 미셸 사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내부고발자 보호 내용이 담긴 부정부패 방지 관련 법안¹⁾을 발표하였다. 특히 지난 5~6월에는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판결이 상반된 내용으로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프랑스 내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내부고발 근로의 법적 보호와 현재 주목받고 있는 두 판결을 소개하며, 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프랑스 내 관련 보호 규정

유럽인권협약

EU 회원국인 프랑스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La 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이하, 유럽인권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선의로 신고하는 모든 근로자는 보호받는다. 최근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내부고발을 이유로 행해진 해고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을 근거로 무효를 인정한 바 있다.²⁾ 이 판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 정식 명칭은 투명성, 부정부패 방지 및 경제적인 삶의 현대화 법안(Projet de loi relatif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이다.

2) Cass. Soc., 30 juin 2016, n°15-10.557.

프랑스 내 관련 법률

프랑스에서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법 규정의 역사는 길지 않으며, 최근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여러 개의 법안들이 통과되었는데, 근로 안전·위생 안전·공공 건강·환경에 관련된 ‘특정 위험’이나 성희롱·정신적 괴롭힘·차별·의료기업 내 부당대우·부정부패·이해관계 충돌과 같은 ‘특정 사안’에 관련된 법안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법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에 대한 요청이 있어 왔다(Agnès Cerf-Hollender, 2016).

일단 법률에 의해 내부고발자로 인정되면, 신고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 면제가 주어진다. 프랑스에서 내부고발과 관련한 카테고리로는 크게 ① 민간부문의 부정부패에 관한 신고, ② 공공보건과 환경에 관한 중대한 위험에 대한 신고, ③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신고로 나눌 수 있다(Alain DUPAYS, 2016).

탈세 또는 경제·재무 관련 신고

2013년 12월 6일자 ‘탈세 또는 경제·재무 관련 중대한 범죄 방지 법안’³⁾은 그동안 특정 사안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했던 규정들과는 달리 ‘부정행위나 범죄’로 그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나아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법안에 따라 규정된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 L.1132-3-3조에서는, 업무수행 시 알게 된 부정행위 또는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선의로 신고하거나 증언한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채용 절차 또는 기업 내 연수·직업훈련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어느 근로자도 처벌받거나 해고되거나, 임금, 인센티브 또는 활동 배치, 직업훈련, 재배치, 업무 할당, 직급, 분류, 승진, 전근 또는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차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에서는 신고자가 부정행위 또는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해 선의로 신고나

3) La loi no 2013-1117 du 6 décembre 201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ude fiscale et la grande délinquance économique et financière.

증언을 했다고 추정되는 요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서 자신의 결정이 그 신고나 증언과 무관한 이유로 행해졌다는 정당성에 대해 입증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프랑스 노동법전 ‘비차별금지’ 장(章)에 위치하고 있어 동 법전 L.1132-4조의 적용을 받아, 비차별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무시한 사용자의 모든 조치나 행위(예를 들어 ‘해고’)는 모두 무효이다.

공공보건·환경 관련 신고

2013년 4월 16일자 법안⁴⁾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공공보건과 환경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선의로 그것을 사용자,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증언하였다면, 근로자는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다(C. santé publique, art. L. 1351-1). 이 경우에도 재판의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 근로자가 신고와는 무관한 이유로 해고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해충돌에 관한 신고

2013년도 10월 11일자 공직생활의 투명성을 위한 법안⁵⁾은 정부 관계자나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서 보호되는 신고의 대상은 이해충돌의 경우로 국한되며, 정부 관계자와 지역 위원 등 법률에 정한 자들로만 대상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동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에 따라 이해충돌에 대해 신고하는 근로자는 그의 사용자, 기관 내의 직업윤리 담당자, 공인된 부정부패 대책 기관,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은 신고를 이유로 행해진 모든 차별과 제재, 그리고 해고는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악의에 기인한 신고는 법률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신고자가 악의로 또는 해를 입힐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역 5

4) La loi du 16 avril 2013 n°2013-316 relative à l'indépendance de l'expertise en matière de santé et d'environnement et à la protection des lanceurs d'alerte.

5) La loi du 11 octobre 2013 n°2013-907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년과 4만 5천 유로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내용을 이루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이는 추후 별도 입법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사팽 2 법안(Loi Sapin 2)

올해 미셸 사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투명성, 부정부패 방지 및 경제적인 삶의 현대화’ 법안,⁶⁾ 일명 사팽 2 법안(Loi Sapin 2)을 제안하였다. 이는 2016년 7월 8일 상원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9월 국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해 법안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내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률이 적용범위와 절차에 따라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요청되어 오던 통합된 보호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다(Françoise Champeaux, 2016). 사실상 금융·경제 관련 법안이지만, 노동법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두 가지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전보다 더 강화되고 통일된 법률 틀 안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임원의 급여 체계에 관한 것이다.

내부고발자 관련 보호 내용

2016년 4월 12일에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Etat)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규정이 정해졌다고 한다. 개정안에서는 내부고발자를 ‘공익을 위하여 범죄나 부정행위, 중대한 법·규정 위반, 환경·건강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또는 중대한 손해에 대해 선의로 신고나 증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내부고발자는 그의 신고를 통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신고 대상에 국가 안보 비밀이나 의사와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내용은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신고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절차와 대상에 대해 정하고 있다(Alain DUPAYS, 2016).

6) Projet de loi relatif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신고는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지만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자신의 직속 상사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즉 회사 내 내부 신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신고 후, 적절한 기간 내에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법·행정기관 등이 그 대상이며, 긴급 사안일 경우에는 바로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 앞으로 각 기업들과 행정기관은 내부적으로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의 기밀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의 대상이 된 자의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징역과 5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내부고발자의 직장생활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는 고발을 이유로 채용·연수·직업훈련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직간접적 차별, 제재, 해고 등 모든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불리한 조치는 모두 무효임을 정하고 있다. 재판 시에는 피고인 측이 차별에 대한 증거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에게는 입증책임이 없다. 만약 신고 이후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노동법원이 21일 내에 기업 내 근로자의 지위 보전 가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판결 전까지 지위 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든 신고하는 것을 방해한 자는 징역 1년, 1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2016년 6월 14일 하원 심의 당시, 신고에 대해 조사하고, 신고에 대해 보복이 있는 경우에 소송 비용 부담 및 피해보상 등을 책임지는 감시 보호기관 창설에 대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26일, 국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한 보호 내용들이 그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계점

내부고발자들을 위하여 한층 더 두터운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팽 2 법안(Loi Sapin 2)이 하원 심의를 통과한 뒤, 15개의 NGO 단체(Attac, Greenpeace, Sherpa, la CFDT 등)들은 내부고발자의 정의를 다시 수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였다. 그동안 국내외 기관과 관련 전문가, NGO 단체, 내부고발자에 대해 연구해온 정부기관의 권고(특히 2014년 유럽의회, 2015년의 UN국제연합, 2015년 하원 안 갈뤼(Yann Galut)의 법안 제안)와는 달리, 이번 법안에 ‘공익에 위협 또

는 중대한 피해'에 대한 신고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État)가 2016년 2월 25일 보고서를 통해, '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사실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양심에 거리낌없이 공익을 위해 위험 신고를 결정한다'고 정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법안 내 정의 조항은 내부고발의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Novethic, 2016).

■ 최신 주요 판례

룩스리크스(Luxleaks) 사건

2012년 5월, France 2 채널 'Cash Investigation' 프로그램에서는 '조세피난처'라는 제목으로, 350개 다국적기업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옮겨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비밀을 폭로하였다. 당시 담당기자인 에두아르 페랭(Edouard Perrin)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소유하고 있던 2만 8천 페이지에 달하는 내부문건을 토대로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이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과세 규정 문서 등 내부문서를 조사하였고, 펄시와 이케아, 페덱스, 코치, 도이체뱅크 등 340개 다국적기업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2014년 11월 폭로되었다.

이 스캔들은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서 근무하였던 앙투안 델투르(Antoine Deltour)와 라파엘 알레(Raphaël Halet)가 외부로 문서를 유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앙투안 델투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폭로가 있는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룩셈부르크 검찰에 의해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한 달 후에는 다른 직원 라파엘 알레도 고소되었다. 이후 2015년 4월, 기자 에두아르 페랭(Edouard Perrin)도 내부 절도와 영업 비밀 침해 등으로 고소되었으며, 특히 근로자들이 문서를 가져오도록 부추겼는지에 대한 혐의를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재판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룩셈부르크의 형사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영업 비밀 침해와 불법 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앙투안 델투르는 12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천5백 유로, 라파엘 알레는 9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천백 유로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들이 세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하였고 공익을 위해 행동하였음을 이유로 그들을 내부고발자로 인정하였지만, 그럼에도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며 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형법상 보장되는 영업 비밀 보호와 내부고발자의 표현의 자유 간 비교형량에서 내부고발자의 권리가 진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 앙투안 델투르의 변호사는 유럽인권법원 판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하였다. 반면 룩셈부르크의 재판부는 기자로서의 일을 한 것뿐이며, 문서 유출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함께 기소된 프랑스 기자 에두아르 페랭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근로자들은 다시 항소를 한 상태이며 검사도 기자를 다시 기소하였기 때문에 모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6월 30일 파기원 판결

건강심사기관의 경영관리 담당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영·행정 담당자가 검사에게 이사회 이사 한 명과 회장의 부정행위 및 자금의 횡령을 신고한 뒤,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2011년 3월에 해고되어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⁷⁾

노동법원은 해고무효에 관한 근로자의 소송에 대해 기각하였다. 이후 2014년 10월 13일 항소법원 판결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에 현실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다. 당시 해고는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행해졌으며, 그것은 보복의 조치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정행위나 범죄를 선의로 신고하는 모든 사람은 보호된다는 현행 노동법전 L.1132-3-3조는 2013년 12월 6일 법안에 근거한 것으로, 해고는 그 이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당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부정부패 신고 관련 법령인 L.1161-1조도 동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항소법원은 '적용 법률의 부재'를 이유로 해고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7) Cass. Soc. 30 juin 2016, n° 15-10.557.

이후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이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므로,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프랑스 내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무효 인정을 한 첫 판결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 요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신고하는 절차, 다시 말해 내부적인 신고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도 중요히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점에서 유럽인권재판소보다 더욱 앞서 나간 판결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판단 쟁점

표현의 자유 vs. 영업 비밀 보호

몇 년 전 HSBC은행에서 정보처리기술자로 근무했던 에르베 팔시아니(Hervé Falciani)는 수천 명의 탈세자 명단을 폭로하였고, 이후 그는 회사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스위스 국제재판의 체포 영장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룩스리크스(Luxleaks) 사건에서도 두 근로자가 세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었지만,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다.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내부고발자는 정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불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오늘날 내부고발자의 현실이다. 이처럼 내부고발자 사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의 대립이며, 앞의 두 사안과 같이 재판에서는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⁸⁾보다는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가 우선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4월 14일, 유럽의회에서는 산업스파이와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

8) 프랑스에서는 노동법전 L.1121-1조에서 근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1946년 헌법의 서문,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근거하여 모든 시민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영업 비밀 보호 지침’을 통과시켰다. 당시 파나마 페이퍼 (Panama Papers) 사건과 룩스리크스 사건의 시기와 맞물리면서,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지침의 통과를 당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축시킨다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Kelsey Kallot, 2016). 그러나 유럽의회는 오늘날 영업 비밀의 도난과 비밀 정보의 불법적 이용 시 기업을 보호할 만한 법적 토대가 부재하여,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제재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럽의회는 많은 비판을 수용하여 결국 초안을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침에 두 가지 적용 예외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부적절한 행동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폭로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예외는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유럽 내 통일적인 보호 틀을 마련하고자 규정된 이 지침은 그나마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진 정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경우,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면책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 대상 및 범위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기업 내 문서를 근거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 해당 기업이 고발 내용을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산업스파이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충분하게 설정하고 있는 반면,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의 문턱은 높아지면서, 표현의 자유 인정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유럽의회 지침 통과 이전, 작년 2015년 1월 마크롱 법(Loi Macron) 개정안 하원 심의 당시, 영업상 비밀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하였었다. 언론의 자유와 내부고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이라며, 민주적으로 옳지 않다는 많은 비판들이 쏟아졌다. 결국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영업상 비밀에 대한 보호 조치 입법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4월 EU지침이 통과됨에 따라, 24개월 이내에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조치들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조만간 관련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다(Le Monde, 2015).

선의의 존부

어떠한 상황이든 내부고발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 또는 폭로하는 근로자의 '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내부고발을 이유로 행해진 해고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고가 선의로 행해져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때 '선의'는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이 적법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곧 행해질 해고를 피하기 위해 단지 거짓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한 근로자는 해고 무효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에 형법상 위법행위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선의로 신고한 근로자의 경우, 만약 그것이 근로자의 실수였으며 결국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도 해고 무효 보호는 적용된다(Frédéric Chhum, 2016).

2016년 6월 30일 파기원의 결정이 있기 며칠 전인 6월 21일 유럽인권재판소(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에서도 내부고발자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 2009년 말,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소아레즈(Antonio Soares) 중사가 부대 내 사령관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며 내부의 행정 감사기관에 신고하였지만, 이후에 그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안토니오 소아레즈 중사는 명예훼손에 대한 가중처벌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고, 자신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사령관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명예,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였으며, 내부고발자의 경우 선의로 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의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근거로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사에게 내려진 명예훼손 선고는 유럽인권협약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Nelly Devouèze, 2016). 결국 사실의 진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으면, 신고자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반면에 내부고발자의 선의가 인정된다면, 신고 또는 고발한 내용이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 결론

보다 엄격해진 내부고발자 신상정보의 공개 금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보호 및 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사팽 2 법안(Loi Sapin 2)을 통해 프랑스의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이 보다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상·하원 심의 당시 제안되었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위반 시 법적인 제재를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익명보장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 신분은 철저히 가린 채 법적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허용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내부고발자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횡령’ 또는 ‘부정부패’와 같이 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될만한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내부고발 근로자에 대한 법적 판단 문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소개한 룩스리크스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고보다는 영업 비밀 유지가 법적으로 우선 보호된다는 점도 내부고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공익을 위한 폭로, 즉 법적으로 보호되는 내부고발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룩스리크스 사건의 두 근로자와 같이 내부문서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아무리 이전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내부고발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이 최근 유럽의회에서 영업 비밀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가 더욱 쉬워질 수 있다. 내부고발은 그 자체의 특성상 어떠한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의 침해는 공익을 위한 제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간의 대립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좀 더 명확한 비교형량 기준의 설정에 대한 프랑스 사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KLI**

참고문헌

- Agnès Cerf-Hollender, *Les lanceurs d'alerte: quelle protection?*, Recueil Dalloz(n^oa19), 2016.5.26. p.1128
- Alain DUPAYS, *Licenciement des lanceurs d'alerte*, Le Lamy social(2016), Wolters Kluwer. pp.3190-3210.
- Françoise Champeaux, *La Cour de cassation s'empare des lanceurs d'alerte*, Semaine Sociale Lamy(n^o1730), 2016.7.4.
- Frédéric Chhum, *Lanceurs d'alerte: nullité du licenciement d'un salarié ayant dénoncé de bonne foi des faits susceptibles de recevoir une qualification pénale*, Village de la justice, 2016.8.5, <http://www.village-justice.com/articles/Lanceurs-alerte-Nullite-licenciement-salarie-ayant-denonce-bonne-foi-des-faits,22782.html>
- Kelsey Kallot, *Lanceurs d'alerte VS secret des affaires*, Le Petit Juriste, 2016.8.21, <http://www.lepetitjuriste.fr/droit-des-affaires/droit-penal-des-affaires/lanceurs-dalerte-vs-secret-affaires/>
- Le Monde, *Journalistes et lanceurs d'alerte sont-ils menacés par la directive sur le secret des affaires?*, 2015.6.17.
- Nelly Devouèze, *De l'importance de la bonne foi du lanceur d'alerte*, Dalloz actualité, 2016.7.5.
- Novethic, *Quelle protection pour les lanceurs d'alerte en Europe?*, 2016.8.15. <http://www.novethic.fr/gouvernance-dentreprise/optimisation-fiscale/isr-rse/proces-luxleaks-quelle-protection-pour-les-lanceurs-d-alerte-en-europe-143994.html>